

속초시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164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3. 5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생활보호법 개정과 현실성이 결여된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 주 요 골 자

- 기금적립 : 매년 지방세 수입액의 1000 분의 1 이상 적립 (안 제2조참조)

3. 참 고 사 항

- 강원 법무 02124 ~ 98 ('93.3.24) 호로 정미안 시달 ————— 별 첨
- 입 법 예 고 ————— '93. 4. 8 ~ '93. 4. 28
-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

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생활보호법제39조와 동법시행령(이하"영"이라 한다)제26조 및 제27조의"를 "생활보호법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(이하"영"이라 한다)제29조 및 제30조의"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금) 기금은 매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다만, 기금의 사용은 생활보호법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 비용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조는 <u>생활보호법 제39조</u>		제1조(목적) - - - -		<u>생활보호법 제37</u>
<u>와 동법 시행령(이하"영"이라 한다)</u>				<u>조와 동법시행령(이하"영"이라 한다)</u>
<u>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</u>		<u>제29조 및 제30조의</u> - - - - -		
<u>립된 생활보호기금(이하"기금"이라 한</u>		- - - - -		
<u>다)의 운용,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</u>		- - - - -		
<u>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u>		- - - - -		
제2조(기금) 기금은 1964년 부터 1973년		제2조(기금) - - -		<u>매년도 지방세 수</u>
까지 지방세 수입액 중에서 적립한 금				<u>입액의 1,0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</u>
액으로 한다				<u>금액으로 한다 다만, 기금의 사용은</u>
				<u>생활보호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</u>
				<u>의한 보호실시 비용이외에는 이를 사</u>
				<u>용하지 못한다</u>